

대구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1. 8. 26.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 : 2021. 8. 27.
- 상정일자 :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9. 6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총무과장 황 두 철)

가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통한 통장 사기 진작 도모.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이·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」 권고에 따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(안 제1조, 안 제2조)
-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(안 제4조)

- 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(안 제4조, 안 제6조)
- 장학금 정액지급 근거 마련 (안 제6조)
-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이·통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」 권고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, 지급금액, 심사기준, 지급방법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